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05. 7.
행정위원회

1. 審 査 經 過.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6월 22일 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7월 1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2005년 7월 4일

제114회(제1차 정례회)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

2. 提 案 說 明 的 要 旨 (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홍성배)

가. 개정이유

- 2001년부터 전자입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입찰서류 접수 및 입찰집행에 대한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입찰참가 신청시 징수하는 입찰참가 수수료의 폐지를 요구하는 관계기관의 권고 및 업계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영등포구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제2호 나목 (5) 입찰참가수수료(5,000원) 규정 폐지

다. 참고사항

- 관련근거 : 재무과-3580(2005.3.25)구청장방침과 관련임

3. 專 門 委 員 的 檢 討 報 告 要 旨 (專門委員 김찬재)

- 전자입찰제가 2001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입찰서류 접수 및 입찰집행이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,
- 전자입찰제는 종전의 서면입찰제에 비하여 비용이 극히 미미함에도 과도하게 입찰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업계의 민원이 제기되었고,
- 2002. 11. 행정자치부 폐지권고, 2004. 5 감사원 입찰참가수수료 조례 개정여부 확인, 2004. 5 공정거래위원회 개선 협조요청 등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
- 공정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審 査 結 果 : 原 案 可 決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6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6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2001년부터 전자입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입찰서류접수 및 입찰집행에 대한 행정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입찰참가 신청시 징수하는 입찰참가 수수료의 폐지를 요구하는 관계기관의 권고 및 업계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영등포구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제2호 나목 (5)

입찰참가수수료(5,000원) 규정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 : 재무과-3580(2005.3.25)구청장방침과 관련입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.

다. 합의사항 : 합의되었음.

라. 기타 - 신.구조문대비표

- 입법예고(2005. 4. 11. ~5.2)

따로붙임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[별표] 제2호 각종 인·허가 및 신고사항 나목 의 (5) "입찰참가신청
1건 5,000원" 을 폐지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개 정(안)		
[별표]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			[별표]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		
2. 각종 인·허가 및 신고사항 (44종)			2. 각종 인·허가 및 신고사항 (44종)		
종 목	단위	수수료	종 목	단위	수수료
나. 신고·신청에 관한 사항			나. 신고·신청에 관한 사항		
(1) ~ (4) (생략)	(생략)	(생략)	(1) ~ (4) (생략)	(생략)	(생략)
(5) 입찰참가신청	1건	5,000	(5) 폐지	폐지	폐지